|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매출환입의 소비세 퇴세 등 2개 항목의 소비세심사비준 사항 폐지 후 유관관리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5년제91호    <국무원의 일괄행정 심사비준항목 등 사항의 폐지 및 조정에 관한 결정> (국발(2014)50호) 규정에 근거하여, "매출환입의 소비세 퇴세 심사비준" 및 "수출과세소비품의 면세처리 후 발생하는 퇴관 또는 국외반품의 소비세 추가납부 심사비준" 2개 항목의 심사비준 사항 폐지 후 유관관리문제에 대한 공고는 다음과 같다.  1. 납세자가 판매한 과세소비품이 품질 등 원인으로 반품이 발생한 경우, 기 납부한 소비세 세금은 반환 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퇴세 수속을 처리할 경우, 발급한 마이너스(-) 증치세 세금계산서, 퇴세 증명 등 자료는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여 등록을 해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확실하게 대조한 후 퇴세를 처리한다.  2. 납세자가 직접 수출한 과세소비품의 면세처리 후, 발생하는 퇴관 또는 국외반품, 재수입 시 이미 면세를 받은 경우, 보충세금을 잠시 처리하지 않아도 되며, 국내 판매로 전환되는 당월까지 기다린 후 소비세를 신고 납부한다.  3. 본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5년12월23일 |  | **国家税务总局**  **关于取消销货退回消费税退税等两项消费税审批事项后有关管理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91号  　 根据《国务院关于取消和调整一批行政审批项目等事项的决定》（国发〔2014〕50号）规定，现就取消“销货退回的消费税退税审批”和“出口应税消费品办理免税后发生退关或国外退货补缴消费税审批”两项审批事项后有关管理问题公告如下：    一、纳税人销售的应税消费品，因质量等原因发生退货的，其已缴纳的消费税税款可予以退还。  纳税人办理退税手续时，应将开具的红字增值税发票、退税证明等资料报主管税务机关备案。主管税务机关核对无误后办理退税。  二、纳税人直接出口的应税消费品办理免税后，发生退关或者国外退货，复进口时已予以免税的，可暂不办理补税，待其转为国内销售的当月申报缴纳消费税。  　 三、本公告自发布之日起施行。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5年12月23日 |